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10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퇴직연금삼성그룹주40증권투자신탁 제1호[채권혼합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 17

3. 정정 사유

- 이익분배 방식 변경(유보분배 → 총액분배)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요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	(추 가)	2026.10.20 : 이익분배 방식 변 경(유보분배 → 총액분배)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 항	가. 이익분배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 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 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 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	가. 이익분배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 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 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 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1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※ 펀드내 자산의 평가·매매차익의 결산·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,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(2,00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(삭 제) (삭 제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